



## ※ 작 성 방 법

1. ①란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
2. ⑩란의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기재합니다.
3. ⑳ ~ ㉒란은 (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)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기재합니다.
  - 배우자 : 5년간 5억원
  - 직계존비속 : 5년간 3천만원 (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,500만원)
  - 기타친족 : 5년간 5백만원
4. ㉔란에는  $[(17) + (18) - ((19) + (23))]$ 의 금액을 기재합니다.
5. ㉓란에는  $[(31) + (32) + (33) + (34)]$ 의 금액을 기재합니다.
6. ㉕란에는  $[(28) - ((29) + (30))]$ 의 금액을 기재합니다.

